탄 원 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별 무죄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

사건번호	2026고합586 (공개 보도 기준)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귀중
피고인	최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탄원취지	공소사실의 개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 선고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법관님께.

저는 최지은 피고인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시민으로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수사보고서에 누가 어떤 책임으로 이름을 남겼는지, 그 문서가 언제 공적 기록으로 등록되었는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공소장과 전산 원본, 관련 수사관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한 사람에 관한 여러 혐의가 서로를 막연하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죄명마다 필요한 사실과 고의를 따로 심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피고인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과 행위를 정확히 나누어 주십시오

2026년 8월 기소에 관한 복수의 보도는 최지은 피고인이 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자 기재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수사관 명의 날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KICS 미등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언론마다 피고인별 혐의를 요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부께서 실제 공소장에 특정된 죄명과 범죄일람, 문서별 행위,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사보고서 한 건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련될 수 있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직권남용의 결과나 직무유기의 고의, 허위공문서작성의 허위 인식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의 독자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직권남용은 ‘권한의 행사’와 ‘의무 없는 일의 결과’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형법 제123조에 관하여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먼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를 별도로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위법한 지시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요건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결과가 직권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최지은 피고인과 검찰 수사관 사이에서 어떤 업무지휘 관계가 있었는지, 문서 작성·검토·결재의 일반적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제 된 요청의 실제 내용이 초안 검토나 내용 확인 등 정당한 업무 협조였는지, 수사관이 실제로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것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전자는 업무 범위와 규정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라면 문서의 작성명의와 증명력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보고서의 원본, 전자결재 이력, 수사관의 작성·검토 참여 내역, 날인 위치와 명의의 의미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실질적 작성자였는지, 공동 검토자였는지, 단지 형식적으로 기명 또는 날인한 것인지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날인이 법령상 의무에 반했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며, 반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날인이라는 설명만으로 허위의 명의표시가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3. 날인의 실제 경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본인의 판단으로 업무상 확인 표시를 한 것인지, 검사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아 작성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서로의 진술이 문서와 메시지 기록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스스로 날인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나 협박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하게 된 행위가 법령·규정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단순한 선후관계나 추측이 아닌 구체적 지시와 업무 진행 경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관의 실제 기여와 문서상 작성명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가 공동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한 경우와 타인의 명의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사용하도록 한 경우를 같은 고의로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4. KICS 미등재는 구체적인 등록 의무와 의식적 직무 포기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대법원 93도3568 및 2021도8361 판결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경우와, 태만·착각 또는 소홀한 수행에 머문 경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KICS에 늦게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지 않았다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 사건 처리 당시의 법령·규칙·내부지침 가운데 해당 종류의 수사보고서를 언제, 누가, 어떠한 절차로 등록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성실의무와 특정 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다릅니다. 직접 입력하는 담당자, 결재 권한자, 등록을 승인하거나 보류하는 사람의 책임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2024년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을 이후의 규정으로 대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 불기소 처분일과 보고서의 최초 생성일, 초안의 상태, 수정 요청·승인 시점, KICS 접속·등록 시도, 파일의 최종 확정과 이관 시점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일 처분 뒤 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공식 등록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재 미완료, 별도의 보완 절차, 담당자 권한 문제, 시스템 장애 등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기록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저는 단순히 시스템 오류나 업무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설명이 제시된다면 당시의 접속 기록과 결재 내역으로 검증해야 하고, 반대로 의도적인 미등재를 주장한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등록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5. 미등재의 위법성과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록 관리 규정을 어겼다면 그 자체로 개선이나 징계가 필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정 위반이 곧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추상적인 성실의무의 불이행 전부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며,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의식적 포기인지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 동안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그로 인해 증거의 보존, 상급자 검토, 수사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 주십시오. 대법원 97도675 판결의 계속적 부작위 법리는 직무유기가 성립한 경우 그 위법 상태의 계속을 설명하는 법리이지만, 이 사건에 등록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유기 고의까지 대신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등록 의무의 구체적 근거, 피고인의 담당 범위, 실제 이행 가능성과 방해 사유, 의식적 포기의 고의,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가능성을 각각 밝히는 심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남는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절차 위반의 평가와 형사책임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문서별 사실과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227조가 문제 삼는 허위는 공문서에 표시된 중요한 사실과 객관적 진실의 불일치입니다. 대법원 2022도6886 판결은 하지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결과서에 기재한 경우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작성일자나 작성 주체에 관한 표시가 실제와 다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이를 단지 보고서의 결론이 타당했다는 이유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 내용의 사실상 기재와 수사결론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8394 판결은 잘못된 법령 적용만으로 공문서에 기재한 사실까지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나 실제 작성하지 않은 날짜나 작성 명의를 진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는 의혹까지 그 판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죄와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성 또는 수정에 누가 관여했는지와 별도로, 문제 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어느 절차에 제시되거나 이용되었는지, 최지은 피고인이 그 사용에 어떤 인식과 관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로 다른 의혹을 하나의 추정으로 묶지 말아 주십시오

검사 측에서는 보고서 사후 수정, 수사관 명의 날인, KICS 미등재가 같은 목적 아래 연결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정황을 종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정황이 여러 공소사실에 관련되더라도, 직권남용에서 수사관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 직무유기에서 등록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는 고의, 허위공문서작성에서 허위성을 알고 작성했다는 인식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2026년 9월 공판준비기일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증거목록의 정리와 공소사실 특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검토할 절차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제기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되거나 특검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쪽의 주장도 결론처럼 인용하지 않고, 증거별 입증 취지와 증거능력·신빙성을 나누어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이 탄원은 누구에게도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 불리하다면 그 사실 역시 외면하지 않되,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이유,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고의와 행위까지 한꺼번에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사재판은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힘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믿습니다. 재판부께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세심하게 가려 주시고,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귀중